

202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7년 3월 입학>



C O N T E N T S

| | |
|-----------------------------------|----|
| 모집단위 및 인원 | 1 |
| 입학전형 일정표 | 2 |
| 지원자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 3 |
| 전형방법 | 5 |
| 학생 선발 방법 | 5 |
| 면접고사 요강 | 6 |
| 지원자격 | 7 |
| 지원자격 유의사항 | 9 |
| 제출서류 | 12 |
| 입학원서 접수안내 | 13 |
| 1. 원서접수 주요사항 | |
| 2. 입학원서 접수 방법 | |
| 3. 서류 제출 방법 | |
| 4. 전형료 비례환불 | |
| 5.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 수험생 유의사항 | 15 |
| 합격자 유의사항 | 15 |
| 대학안내 및 서식 | 16 |
| 1. 자율전공 특별전형 안내 | |
| 2. 학사 안내 | |
| 3. 장학금 안내 | |
| 4. 2026학년도(전년도) 신입생 등록금 현황 | |
| 5. ROTC(학생군사교육단) 안내 | |
| 6. 교내 주요업무별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 |
| [별지 서식] 재외국민 학력 조회 동의서 | |
| [별지 서식] 재외국민 종합기록표 | |
| [별지 서식] 재외국민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
| [별지 서식] 재외국민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 |

■ 학과소개

■ 교통안내

■ 캠퍼스맵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계열 | 대학 | 모집단위 | 전공 | 코드번호 | 입학정원 | 모집인원 | 선발 가능 인원 | | |
|------------|-----------|------------|-------------------|------|------|------|----------|---|-----|
| 전계열 | 용오름대학 | 무전공학부 | | 700 | 122 | 25 | 12 | | |
| 체능 | 무도대학 | 무도계열전공학부 | | 100 | 48 | | 4 | | |
| | | 유도학과 | | 110 | 60 | | 6 | | |
| | | 무도학과 | 레슬링 | | 121 | | 47 | 4 | |
| | | | 씨름 | | 122 | | | | |
| | | | 복싱 | | 123 | | | | |
| | | | 검도 | | 131 | | | | |
| | | 태권도학과 | 겨루기 및 품새 | | 141 | | 82 | 8 | |
| | | 경호학과 | | | 160 | | 33 | 3 | |
| | | 체육과학대학 | 체육계열전공학부 | | 200 | | 24 | 2 | |
| | | | 스포츠레저학과 | | 210 | | 35 | 3 | |
| 체육학과 | | | 230 | 35 | 3 | | | | |
| 골프학부 | | | 250 | 41 | 4 | | | | |
| 문화예술계열전공학부 | | | 300 | 39 | 3 | | | | |
| 예능 | 문화예술대학 | 무용과 | | 310 | 25 | | 2 | | |
| | | 미디어디자인학과 | | 320 | 30 | | 3 | | |
| | | 회화학과 | | 330 | 20 | | 2 | | |
| | | 연극학과 | (연기 / 공연제작 및 디자인) | 340 | 30 | | 3 | | |
| | | 실용음악과 | 보컬 | | 361 | | 33 | 3 | |
| | | | 작곡 | | 366 | | | | |
| | | | 기악 | 피아노 | | | | | 362 |
| | | | | 기타 | | | | | 363 |
| | | | | 베이스 | | | | | 364 |
| | | | | 드럼 | | | | | 365 |
| | | | 국악 | 현악 | | | | | 351 |
| | | | | 관악 | | 352 | | | |
| | | | | 성악 | | 353 | | | |
| | | | | 타악 | | 354 | | | |
| | | 영화영상학과 | | 370 | 22 | 2 | | | |
| 인문사회 | 인문사회융합대학 | 인문사회계열전공학부 | | 400 | 40 | 4 | | | |
| | | 경영학과 | | 410 | 25 | 2 | | | |
| | | 관광경영학과 | | 430 | 23 | 2 | | | |
| | | 경찰행정학과 | | 460 | 23 | 2 | | | |
| | | 중국학과 | | 470 | 22 | 2 | | | |
| | | 사회복지학과 | | 490 | 25 | 2 | | | |
| | | 문화예술대학 | 문화콘텐츠학과 | | 390 | 22 | 2 | | |
| | | | 자연계열전공학부 | | 500 | 34 | 3 | | |
| 자연과학 | AI바이오융합대학 | 보건환경안전학과 | | 510 | 30 | 3 | | | |
| | | AI융합학부 | AI, 빅데이터 | 520 | 60 | 6 | | | |
| | | AI시스템반도체학과 | | 530 | 35 | 3 | | | |
| | | 바이오생명공학과 | | 550 | 25 | 2 | | | |
| | | 식품영양학과 | | 560 | 25 | 2 | | | |
| | | 식품조리학과 | | 570 | 25 | 2 | | | |
| | | 물리치료학과 | | 620 | 30 | 3 | | | |
| | | 문화예술대학 | 문화유산학과 | | 380 | 22 | 2 | | |

- * 연극학과 전공란에서 괄호로 표시된 내용은 교육과정상 운영단위의 표시임
- ※ 무전공학부의 경우 모든 전공 자율 선택(단, 유도경기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 계열별전공학부의 경우 각 계열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단, 유도경기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식품영양학과

모 집 인 원

-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총 25명)
 - 국외근무자의 자녀
- 정원에 관계없이 본교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 특수체육교육과 지원 불가

입학전형 일정표

|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
| 입학원서접수 | 2026. 7. 6.(월) 10:00 ~ 10.(금) 15:00 | uway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 | 인터넷 접수만 실시 |
| 서류제출기간 | 2026. 8. 7.(금) 15:00까지 | 본교 입학관리실 | 본인, 대리인, 우편제출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 면접고사 (해당자만 응시) | 2026. 8. 7.(금) | 본교 지정 장소 | 면접 고사시간 발표는 2026년 7월 28일(화) 15:00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 최초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15:00 이후 | 본교 입학 홈페이지 | 합격자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문서등록 안내문 출력 |
| 합격자 최초 등록 (온라인 문서 등록) | 2026. 12. 21.(월) 09:00 ~ 23.(수) 13:00 | 문서등록 | · 본교 입학관리실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하여 등록 여부를 확정하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함 · 최초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금 확정 후 최종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 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 충원 합격자 발표 | 2026. 12. 23.(수) ~ 29.(화) 18:00까지 ※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문서 등록 | · 주말/공휴일 포함 충원합격발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발표 차수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함 |
| 충원 합격자 문서등록 마감 | 2026. 12. 30.(수) 16:00까지 | 문서등록 | · 지정된 기간 내에 미등록 시 다음 순위자에게 합격이 넘어감 · 일자별 세부 합격발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 합격자 최종 등록 (등록금 납부) | 2027. 2. 10.(수) ~ 12.(금) | 본교 지정 금융기관 | |

- ※ 면접고사 시간대 변경 불가
- ※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전형에 참석해야 함(불참시 불합격)
- ※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 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 함
- ※ **문서등록**: 예치금 납부 없이 합격자가 온라인상에서 등록 의사를 대학에 알리는 과정으로 입학관리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문서등록 미이행 시 합격이 취소됨
- ※ 합격자는 최초 등록(문서등록) 후 최종 등록(본교 지정 금융기관)까지 완료해야 최종 등록 처리되며,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됨

주의

대입 지원에서 부정할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할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가.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2. 복수지원 금지 사항

-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나.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
- 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라.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마.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3. 등록

가.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등록이란 별도의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한 상태를 의미함)

4. 이중등록 금지

-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함
- 나. 수시모집 합격자 문서등록 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라.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가. 본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 본교의 합격자로 분류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에서 활용됩니다.

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 수집항목 |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수험생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생부, 졸업(예정)연도, 환불 계좌 |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오리엔테이션 안내문자 발송, 장학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 10년 |
| 보호자 정보 |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 학교 정보 | 고교명, NEIS 코드, 고교 전화번호 |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등 |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등 | |
| 보험회사(학교지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형일 면접고사 대상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입학전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기관 | 제공하는 항목 | 제공하는 목적 | 보유기간 |
|-----------------|-----------------------|---------------|------|
| 국제교류교육원 지정 협약업체 |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어학 강좌 프로그램 안내 | 1년 |
| 학점은행제 | | 학점은행제 입학안내 |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고유식별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
| 학사 관리(학적부 생성) | 주민등록번호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형방법

1.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내

| 지원자격 | 일괄합산 전형 | | 전형 총점 | 비고 |
|-----------|---------|------|------------|--------------------|
| | 서류 | 면접 | | |
| 국외근무자의 자녀 | 적부 | 100% | 100%(100점) |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 시 불합격 |

※ 서류전형은 재학기간, 체류기간, 재직기간의 지원자격을 적부를 심사함

2. 정원 외 모집인원 2%(총 25명) 이외 무제한

| 지원자격 | 서류 | 전형 총점 | 비고 |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 100% | 100%(100점) |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 시 불합격 |

※ 서류전형은 재학기간, 체류기간의 지원자격을 적부를 심사함

3.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방법

가. 국외근무자의 자녀

| 학교폭력조치사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
| 감점 점수 (총점 100점 기준) | - | - | - | 2 | 4 | 6 | 8 | 10 | 20 |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각 호수에 따라 최저 0점 ~ 최고 20점까지 개인별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며
 처분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총점에 반영함

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 학교폭력조치사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
| 반영 방법 | - | - | - | - | - | - | - | - | 불합격 |

학생 선발 방법

-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면접점수에 의한 성적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원 발표 일정에 따라 총원 합격자를 발표한다.
- 동점자는 아래와 같은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면접성적(문항 영역 순 성적)
 - 기본소양(인성 및 태도, 사고력, 표현력) 점수가 높은 자
 - 전공적성(이해력, 논리성, 표현력) 점수가 높은 자
 - 국외학교 수학기간이 오래된 자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 본교에서 실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면접고사에 불참한 자(해당자에 한함)
 -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고사 요강

1. 대상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면접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은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가 아님)

2. 면접고사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평가배점 현황

| 구분 | 평가기준 | 평가내용 | 문항수 | 배점 (최저~최고) |
|------|-----------------------|--|-----|---------------|
| 기본소양 | 인성 및 태도 사고력 표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름대로의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 진지한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있는가? • 어휘 사용이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1문항 | 0 ~ 50점 |
| 전공적성 | 이해력 논리성 표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답변)를 갖고 있는가?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 어휘나 용어의 선택이 적절하며, 창의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가? | 1문항 | 0 ~ 50점 |

3. 수험생 준비물 : 수험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허용

4. 수험생 유의사항

가. 면접평가 시 지원자의 수험번호, 성명,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 직장명, 직위 등을 언급할 경우 면접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상품명 또는 로고가 없는 단정한 복장 착용

다. 대기실 및 고사장에서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국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 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국외근무자의 자녀

-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가. 국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나.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 가.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나. 학력요건 :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다.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한글학교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재학·체류·재직 기간

| 구분 | 최저 국외 재학·체류·재직 기간 | | | | |
|-----------|-------------------|-----|-----|-----|-----|
| | 학생 | | 보호자 | | 배우자 |
| | 재학 | 체류 | 재직 | 체류 | 체류 |
| 국외근무자의 자녀 | 3년 | 3/4 | 3년 | 2/3 | 2/3 |

[국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구분 | 내용 |
|------------|--|
| 국외 재학기간 |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 국외 체류기간 | · 학생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참고 1)

- 학생 및 보호자의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 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구분 | 기간 |
|---------------|--------------------------|
|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 국외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 |
| 보호자 국외 근무기간 | 국외 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 |
| 학생 국외 재학기간 | 국외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 |
| 국외 체류일수 인정 기준 | 체류일수 인정 기간 |

(참고 2)

2. 국외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지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3. 「국외학교」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서 해당국의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며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과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한다.

4.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5. 코로나19(COVID-19)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 기간에 대한 인정

- 가.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 나. 소명자료 :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본교 양식) 및 관련 증빙 서류
- 다. 인정 기준 : 코로나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6. 지원자격 판정 예시

가. 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

| 예시 내용 | |
|--|---|
| - 국외 학사일정 : 중2 과정(2021. 8. 1. ~ 2022. 6. 23.), 중3 과정(2022. 8. 1. ~ 2023. 6. 23.), 고1 과정(2023. 8. 1. ~ 2024. 6. 23.) - 국외 재학기간 : 중2 과정(2021. 8. 1. ~ 2022. 6. 23.), 중3 과정(2022. 8. 1. ~ 2023. 6. 23.), 고1 과정(2023. 8. 1. ~ 2024. 6. 23.) - 국외 재직기간 : 2021. 8. 1. ~ 2024. 7. 31.(발령일 기준)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 상기 기간 외에는 국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 |
| 1 |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학생의 재학기간은 (예시1)과 같이 원칙적으로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하지만, 중2 과정(2021. 8. 1. ~ 2022. 7. 31.), 중3 과정(2022. 8. 1. ~ 2023. 7. 31.), 고1 과정(2023. 8. 1. ~ 2024. 7. 31.) (예시1)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이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예시2)와 같이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합니다. 중2 과정(2021. 8. 1. ~ 2022. 6. 23.), 중3 과정(2022. 8. 1. ~ 2023. 6. 23.), 고1 과정(2023. 8. 1. ~ 2024. 6. 23.) (예시2) |
| 2 | 질문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상 3년을 재직해야 하므로 2021. 8. 1.부터 2024. 7. 3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학생의 재학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여 온전한 학기를 이수하여 재학기간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의 기준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 3 | 질문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예시3)과 같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을 기준으로 매 학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273일 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243일 이상) 체류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2 과정(2021. 8. 1. ~ 2022. 7. 31.), 중3 과정(2022. 8. 1. ~ 2023. 7. 31.), 고1 과정(2023. 8. 1. ~ 2024. 7. 31.) (예시3) |
| 4 | 질문 학생이 고1 과정 수료 후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고1 과정(2023. 8. 1. ~ 2024. 7. 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충족 |
| 5 | 질문 국외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고1 과정(2023. 8. 1. ~ 2024. 7. 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충족 |
| 6 | 질문 국외근무자가 발령 종료일이 변경되어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고1 과정(2023. 8. 1. ~ 2024. 7. 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미충족(국외근무자의 국외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4. 7. 31.까지 재직 필요) |

나.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1

예시 내용

- 국외 학사일정 : 중2 과정(2021. 8. 1. ~ 2022. 6. 23.), 중3 과정(2022. 8. 1. ~ 2023. 6. 23.), 고1 과정(2023. 8. 1. ~ **2024. 6. 23.**)
- 국외 재학기간 : 중2 과정(**2021. 9. 1.** ~ 2022. 6. 23.), 중3 과정(2022. 8. 1. ~ 2022. 6. 23.), 고1 과정(2023. 8. 1. ~ **2024. 6. 23.**)
- 국외 재직기간 : **2021. 9. 1. ~ 2024. 8. 31.(발령일 기준)**
-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 * 상기 기간 외에는 국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 | | |
|---|----|---|
| 1 | 질문 |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
| | 답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자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기 때문에 (예시4)와 같이 추가적으로 고2 과정 한 달의 재학기간이 필요함 <u>중2 과정(2021. 9. 1. ~ 2022. 6. 23.), 중3 과정(2022. 8. 1. ~ 2023. 6. 23.), 고1 과정(2023. 8. 1. ~ 2024. 6. 23.),</u> <u>고2 과정(2024. 8. 1. ~ 2024. 8. 31.)</u> (예시4) |
| 2 | 질문 |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
| | 답변 |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상 3년을 재직해야 하므로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
| 3 | 질문 |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
| | 답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자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날짜까지 각각의 1개 학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273일 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243일 이상) 체류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예시5)와 같이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체류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u>중2 과정(2021. 9. 1. ~ 2022. 8. 31.), 중3 과정(2022. 9. 1. ~ 2023. 8. 31.), 고1 과정(2023. 9. 1. ~ 2024. 8. 31.)</u> ② <u>중2 과정(2021. 9. 1. ~ 2022. 7. 31.) + 고2 과정(2024. 8. 1. ~ 2024. 8. 31.), 중3 과정(2022. 8. 1. ~ 2023. 7. 31.),</u> <u>고1 과정(2023. 8. 1. ~ 2024. 7. 31.)</u> (예시5) |

다.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2

예시 내용

- 국외 학사일정 : **고1 과정**(2023. 8. 1. ~ 2024. 6. 23.), **고2 과정**(2024. 8. 1. ~ 2025. 6. 23.), **고3 과정**(2025. 8. 1. ~ **2026. 6. 23.**)
- 국외 재학기간 : **고1 과정**(2023. 9. 1. ~ 2024. 6. 23.), **고2 과정**(2024. 8. 1. ~ 2025. 6. 23.), **고3 과정**(2025. 8. 1. ~ **2026. 6. 23.**)
- 국외 재직기간 : **2023. 9. 1. ~ 2026. 8. 31.(발령일 기준)**
-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 * 상기 기간 외에는 국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 | | |
|---|----|--|
| 1 | 질문 |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
| | 답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자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달의 재학기간이 필요하나 고3 과정 후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1 ~ 중3 과정 중 국외 재학, 체류, 재직기간이 충족된다면 지원자격 충족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국외 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북한 탈주 주민 | 비고 | |
|-----------|---------------------------------|----------------------------------|-------------------------|----------------|---|-------------------------|
| 1 | 입학원서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원서접수처 출력 | |
| 2 | 학력조회동의서 | ● | ● | | - 인터넷 접수 시 출력 후 작성 | |
| 3 | 종합기록표 | ● | ● | ● |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후 출력 | |
| 4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 ● | ● | | - 재학증명서는 반드시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명서상에 재학기간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의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를 함께 제출 - 학사일정표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캡처 화면 제출 가능 (홈페이지 내용 증빙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필수_확인용) -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 |
| 5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6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 | | - 부모 이혼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② 학생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
| 7 | 출입국사실증명(부, 모, 학생 모두) | ● | ● (학생만) | | - 학생은 출생일부터 발급 시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단, 부모는 학생의 중·고교 재학 기간부터 발급 시까지의 기록 제출) | |
| 8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 위임장 (부, 모, 학생 모두) | ● | ● (학생만) | | | |
| 9 | 여권 사본(부, 모, 학생 모두) | ● | ● (학생만) | | | |
| 10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모두) | ● | | | - 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https://consul.mofa.go.kr) | |
| 11 | 국외 파견 재직자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 | - 국외 근무 경력 기간(파견 기간) 명시 | |
| | | 국외지사설치인증서 사본 또는 국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 | | -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 - 국외근무 시작일 이전에 승인된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와 국외지사설치인증서 및 국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회사명이 다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
| | 자영업 | 현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 | | | |
| | 현지법인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 | | - 국외 근무 경력 기간 명시 |
| | | 현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 | | | |
| | 국외 파견 교직원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 | | - 국외 근무 경력 기간(파견 기간) 명시 |
| | | 파견사실증명서(재직 학교 자체 양식) | ○ | | | |
| | 국외 선교활동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 | | - 국외 근무경력 기간 명시 |
| 파송선교사확인서 | | ○ | | | - 교회 재단 : 제출 가능 - 본인 자발적 선교 : 제출 불가 | |
| 국외 유학 연수자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 | | - 국외 근무경력 기간 명시 | |
| | 파견사실증명서(재직 회사 자체 양식) | ○ | | | | |
| 13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 | | |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 | - 해당자에 한함 | |
| | 택1 |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 | | ○ | |
|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 - 본인 해당하는 증명서로 선택하여 제출 |
| | | 국내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재학증명서가 없는 경우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제출해야 함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해야 함
- ※ 국외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함. 단, 교육부에서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의 제 증명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이 필요 없음
- ※ 제출서류 외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서류 제출 시 항목별 연번이 낮은 번호의 서류가 위로 가도록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최종등록 이후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함

입학원서 접수안내

1. 원서접수 주요사항

가. 접수기간 : 2026. 7. 6.(월) 10:00 ~ 10.(금) 15:00

나. 접수방법 : 용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접속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배너 클릭

다. 전형료

| 유형 구분 | 면접 구분 | 전형료 | | 인 터 넷 원서접수 수수료 | 납부 총액 |
|----------------|----------|---------|-------------|----------------------|----------|
| | | 기본전형료 | 면접고사 전형료 | | |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면접 대상 | 7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5,000원 |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 | 70,000원 | - | 5,000원 | 75,000원 |
| 북한이탈주민 | | | | | |

라.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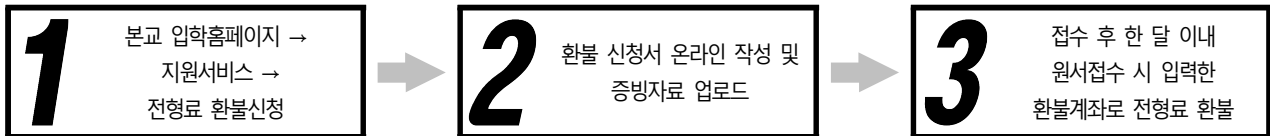
마.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단순변심, 지원자격 미달 등의 경우에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음

사. 면접고사에 불참한 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타 대학 고사일 중복으로 인한 불참 포함). 단,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전형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해당 일까지 전형료 환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전형료를 전액 환불함(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 불가 및 환불 불가). 또한 지정된 신청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접수 불가

★ **전형료 환불 신청 마감 일시 : 2026. 8. 6.(목) 15:00까지(기간 이후 신청 불가)**

① 온라인 신청



※ 전형료 환불 계좌를 공통원서 작성 시 필히 사전 입력해야 하며,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계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없음

② 방문 신청 : 본교 입학관리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입학원서 접수방법



※ 입학원서접수 마감 시한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해야 하며, 시한 경과로 인하여 원서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3. 서류 제출방법

- 가. 제출기간 : 2026. 8. 7.(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제출장소 : (우) 170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134 용인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실
-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라. 제출서류 도착확인 : 해당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 홈페이지나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jin.ac.kr에서 확인 가능
단, 서류의 도착 유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4. 전형료 비례환불

-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의거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이며, 전형료 반환은 2027년 4월 30일 이전 본교가 공지한 반환 기간에만 반환한다.
-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본교 직접 방문 또는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 계좌로 이체 중 하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하여야 한다.
- 다.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직접방문 창구 운영 및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 라.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5. 입학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자는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반드시 읽어본 후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하다. 입력을 잘못하여 생긴 불이익(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나. 인터넷 원서접수자의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 재학 중이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1부를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다.
- 라. 원서접수 후 제출서류가 있는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검토결과 지원자격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수험생 유의사항

- 전형일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은행카드 겸용 학생증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코팅된 학생증은 위변조가 용이하여 확인 불가)을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신분증 발행 전 임시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지참해야 함
- 입학원서의 입력사항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와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입학を 취소한다.
- 제출서류 상의 성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할 수 없다.
-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입학전형 성적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생선발방법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결정에 의한다.

합격자 유의사항

- 최초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합격자 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가. 제출 대상자 : 2027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종 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나. 추가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공통)
2) 고등학교 최종 성적증명서 1부(공통)
3) 국외고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모두)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고교 졸업 일자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부모 중 1인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세금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제출기간 : 2026. 2. 13.(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장소 : (우) 170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실
마.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바.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반드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해야 함

4. 등록금 환불 절차

가.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1)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 접속하여 등록 포기 신청 버튼을 클릭
- 2) 로그인하여 등록 포기 신청

나. 등록금 환불 시 주의사항

: 등록금 환불 신청자는 환불 신청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하므로 기 제출한 등록금 환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등록금 환불금액

| 구 분 | 2027년 2월 28일까지 | 2027년 3월 1일부터 |
|-----|----------------|---------------------------------|
| 금액 | 등록금액의 100% | 본교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일정 금액 공제 후 지불 |

5. 합격 취소

가.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가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다. 입학을 허가한 자를 대상으로 전적학교로의 학력조회 등을 실시하며, 확인 후 자격 미달자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대학안내 및 서식

1. 무전공학부 및 계열별전공학부 안내

가. 기초교양 & 전공탐색

- 용인대학교는 윤리적 교양인, 창의적 전문인, 실천적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HUMANITY교양영역에 따른 기초학문과 인성 및 글쓰기를 포함한 실무영어, 인공지능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찾기 위하여 모든 학(과)부 또는 동일계열 내의 모든 학(과)부의 과목(기초전공 및 전공)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무전공(계열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1학년에는 관심 있는 교양 및 전공 수업을 듣고,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무전공(계열전공)학부는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구분 | 무전공 | 계열전공 |
|-------|---|---------------------|
| 학과 선택 | 모든 학(과)부 선택 가능 | 동일 계열 내 학(과)부 선택 가능 |
| 전공 | ※ 특수체육교육과(사범계열), 유도경기지도학과(특성화), 물리치료학과(보건계열) 제외 2학년 진급시 원하는 학(과)부 선택(선택한 학(과)부의 졸업이수기준 충족) | |

• 유의 사항

- 2학년 진급 시 본인이 원하는 학(과)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는 학사 행정은 공통사항임

나. 무전공(계열전공)학부 Q & A

- Q. 무전공(계열전공) 입학 후 하더라도 2학년 전공 선택 시 성적에 따라 원하는 학(과)부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과정(2개 학기)을 마친 후 성적과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고,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용인대의 교육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학(과)부에서는 신입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학(과)부를 선택하는 학생 수에 따라 학(과)부의 크기가 자체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부담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무전공으로 입학해서 1학년에 유도학과와 경찰행정학과 전공과목을 한과목씩 들었는데 2학년에 경찰행정학과를 선택 했을 경우, 1학년에 들은 유도학과 전공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A. 전공으로 선택한 경찰행정학과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되며, 유도학과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Q. 계열전공으로 입학해서 1학년에 경영학과 전공을 들었는데 2학년에 중국학과를 선택을 했을 경우, 1학년에 들은 경영학과 전공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A. 과목을 이수한 학과(경영)와 선택한 학과(중국)가 다르면 전공 인정은 불가합니다. 1학년에 이수한 경영학과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고, 졸업 전까지 중국학과 기초전공을 이수해야 합니다.
- Q. 무전공(계열전공)으로 입학하면 졸업장은 어떻게 명시가 되나요?**
A. 2학년에 선택한 전공학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2학년 진급 시 체육학과를 선택하였다면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로 졸업합니다.

2. 학사 안내

가. 전과 안내

- 신청 자격
 - 3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 유의 사항
 - 전과 희망 학과의 별도 선발기준(성적, 면접 등)이 있을 수 있음
 - 전입 학과의 여석이 없을 경우 전과승인 불허함
 - 전입 학과의 졸업이수기준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기초)전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재학 중 2회에 한해 가능함
 - 예·체능 특기자(체육우수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징계받은 자 신청 불가

나. 부·복수·연계·융합전공 안내

| 구 분 | 부전공 | | 복수전공 | | 융합전공 | | 연계전공 | |
|----------|---------------|---------------------------|-------------------------|---------------------------|----------------|---------------------------------|---------------|--|
| 신청 가능 학과 | 대학 내 모든 학과 가능 | |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가능 | | 개설된 융합전공에 한함 | | 개설된 연계전공에 한함 | |
| 신청 자격 | 3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 | |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포기 | 2회에 한하여 포기 신청 | | 1회에 한하여 포기 신청 | | 2회에 한하여 포기 신청 | | 1회에 한하여 포기 신청 | |
| 학위 수여 | 졸업증명서에 부전공 표기 | | 복수전공 학위 동시 수여 (졸업논문 제출) | | 졸업증명서에 융합전공 표기 | | 연계전공 학위 동시 수여 | |
| 졸업 이수 기준 | 주 전공 | 기초전공 12학점 전공 33학점~35학점 | 주 전공 | 기초전공 12학점 전공 33학점~35학점 | 주 전공 | 기초전공 12학점 전공 33학점~35학점 | 주 전공 | 기초전공 12학점 전공 33학점 (지정과목 중 14학점 포함) |
| | 부 전공 | 기초전공 12학점 전공 9학점 | 복수 전공 | 기초전공 12학점 전공 33학점~35학점 | 융합 전공 | 융합전공 15학점 융합전공 지정과목 중 6학점 이상 | 연계 전공 | 지정과목 중 21학점 |

- 유의 사항
 - 무전공, 계열전공자는 학과 선택 후 신청 가능함
 - 신설 학과는 해당 학과 졸업자가 배출된 후 부·복수·연계·융합전공 신청 가능함
 - 부·복수·연계·융합전공을 2개 이상 이수하는 경우 정규학기 기간 내에 졸업이 불가할 수 있음

다. 조기졸업 안내

- 신청 자격
 - 2학기에서 4학기 이내 신청 가능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취득, 매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신청 가능 (재수강, 재이수로 인해 삭제된 성적도 모두 포함하여 평점평균을 산정함)
- 유의 사항
 -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수기준을 모두 이수하고 매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총 평점평균 4.3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가능 (재수강, 재이수로 인해 삭제된 성적도 모두 포함하여 평점평균을 산정함)
 -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의 경우 조기졸업이 취소됨
 - 학칙에 의한 징계 받은 자는 신청 불가

3. 장학금 안내

가. 교내장학금

: 이사장, 성적우수(I,II,III), 체육우수, 글로벌인재, 보훈, 공로(학생간부), 교직원직계자녀, 생활복지, 언론(대학신문사/교육방송국), 근로(국가 및 일반), 각종경시대회, 외국인유학생, 학군간부, 입영훈련우수후보생, 고시, 인턴십, 포인트, 홍보대사, 버디, 교직원기금, 코리아CC, 국제교류 등

나. 교외장학금

• 학과지정장학금

: 삼구구자관장학금(경찰행정학과), 조진형장학금(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동문회장학금(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재직교수장학금(경찰행정학과), 김상용장학금(경영학과), 경영학과장학금(경영학과), 리더스클럽장학금(경호학과), 경호학과동문회장학금(경호학과), 발광엔터테인먼트장학금(동양무예학과-택견), 무도스포츠학과(씨름)장학금, 태권도학과지정장학금, 한국가스공사(태권도학과),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학금(문화재학과), 문화콘텐츠학과재직교수장학금(문화콘텐츠학과), 검도동문회장학금(검도), 중국학과동문회장학금(중국학과), 소액정기기부장학금 등

•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는 장학금

: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재)한원장학회, KRA농어촌희망재단, (재)주심장학재단, (재)우리 다문화장학재단,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재)서울장학재단, (재)성남시장학회, (재)옥산장학회 등

• 단과대학으로 추천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정하는 장학금

: (재)용인대학교동문회장학재단, 경기도체육회 등

• 장학재단에서 지급대상자를 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용인대학교직원노동조합장학금, (재)삼송장학회, (재)정산장학재단, (재)본술김종한장학재단, (재)송천재단, (재)협성문화재단, 경기도 태권도 동문회 등

• 기타 : 각 지방자치단체 애향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각종 지정기부장학금 등

다.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 등

라. 문의사항

: 각종 교내외장학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학사지원-장학대출제도)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참고사항

: 상기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결과 및 해당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2026학년도(전년도) 신입생 등록금 현황

본교 2026학년도 계열별 등록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계열 | 수업료(학기) | 비고 |
|-------|-----------|------------|
| 무전공학부 | 4,778,000 | |
| 인문사회 | 3,743,000 | |
| 자연과학 | 4,187,000 | |
| 체능 | 4,172,000 | 특수체육교육과 포함 |
| 예능 | 4,778,000 | |

※ 무전공학부로 입학하여 2학년 때 전공 선택 시 2학년 등록금(수업료)은 해당 계열 등록금(수업료)으로 다시 책정됨

5. ROTC(학생군사교육단) 안내

학군사관(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 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교 양성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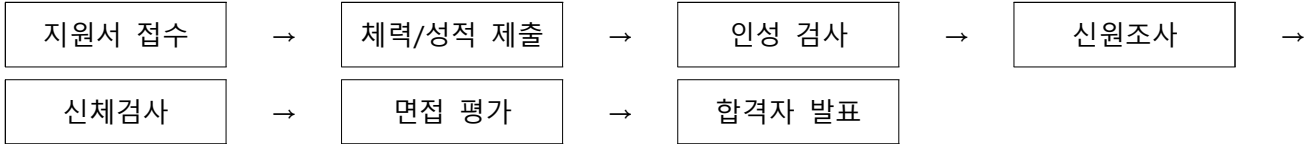
가. 모집 대상

- 1) 학군단 설치 대학의 1, 2학년(남·여학생)
- 2)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

나. 모집 시기

- 1년에 2회(전반기 : 3~4월 / 후반기 : 9~10월)

다. 선발 과정



라. 다양한 혜택

-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 발급 (육군 휴양시설 이용 가능, 육군 문화공연 및 협약 업체 할인, PX이용 혜택 등)
- 국내 및 해외 전사적지 탐방
- 대학별 우수 후보생 ROTC 장학재단 등 장학금 지원
- 단기 복무 장려금(1,200만원) 및 학군생활 지원금(360만원), 교보제비(163만원), 훈련비(315만원)
- 학군단복 및 가방, 체육복(화), 전투복 등 각종 의류 및 훈련품목 무료제공
- 동·하계 입영훈련간 계절학기 학점(1점) 인정

마. 임관 후 혜택

- 장교과정 중 최저기간 복무 (28개월)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 장기 지원 시 국내외 민간대학원 국비취학 가능
- 군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 임관 시 연봉 약 3,0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6,000만원 마련 가능(후보생 기간 호봉 인정, 1년 후 중위 진급)
- 군 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바. 전역 후 혜택

-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 취업여건 보장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배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 약 25만명 규모)

사. 학생군사교육단 전담 상담관 운영

- 후보생 생활 간 겪는 고충을 대학 학생생활상담센터 내 학군단 전담상담관 별도 임명하여 상담지원

6. 교내 주요업무별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입학전형 및 제반업무 안내 | 입학관리실 | 031-8020-2917~8, 3092~4 |
| 학점, 전과, 휴학, 교직이수 안내 | 학사관리과(학적계) | 031-8020-2514~5, 2993~4 |
| 수강신청 안내 | 학사관리과(수업계) | 031-8020-2510~1, 2516 |
| 등록금 납부(등록) 관련 안내 | 회계과 | 031-8020-2529, 2530 |
| 각종 장학제도 및 학자금대출 안내 | 장학과 | 031-8020-3058 |
| 기숙사 안내 | 생활관 운영과 | 031-8020-3355~6 |
| 교통 안내 | 학생지원과 | 031-8020-2520~1, 2892 |
|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안내 | 장애학생지원센터 | 031-8020-2520 |
| 취업 및 구직 안내 | 취창업지원센터 | 031-8020-2524, 3234 |
| ROTC 안내 | 학생군사교육단 | 031-8020-3480, 3477 |
| 병무안내 | 비상계획과 | 031-8020-2562~3 |
|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안내 | 국제교류교육원 | 031-8020-2915 |
| 무전공학부 안내 | 용오름대학 | 031-8020-3469 |
| 각 학과 및 계열별전공학부 안내 | 무도대학 교학과 | 031-8020-2855 |
| | 체육과학대학 교학과 | 031-8020-2660 |
| | 문화예술대학 교학과 | 031-8020-2688 |
| | 인문사회융합대학 교학과 | 031-8020-2745 |
| | 시바이오융합대학 교학과 | 031-8020-3074 |



YONG IN UNIVERSITY

학력 조회 동의서

Office of Admission, Yong In University
134 Yongindaehak-ro,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92, Korea

Tel 82-31-8020-2918
Fax 82-31-8020-2737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Yong In University in Yongin-si, Korea for the 2027 academic year and agree that Yong In University could rightfully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your full assistance to Yong In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ment.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yyyy/mm/dd

Date of graduation : _____
yyyy/mm/dd

High School Name : _____


High School Address : _____

Tel : _____


Fax : _____

E-mail : _____

Website address : _____



Signature



Date *yyyy/mm/dd*

[재외국민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부, 모, 학생 각각 1부씩 작성

| 접수번호 (Receipt No.) | 접수일 (Receipt Date) | 발급일 (Issue Date) |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 즉시 (Immediately)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 성명 (Full name) | | 연락처 (Phone No.)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 | | |
|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v]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미포함 No | | |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포함 Yes []미포함 No | | |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부터(from) 까지(to) ※ 학생은 출생일로부터, 부모는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부터 발급일까지 기간 입력 | | | | |
| 용도 (Purpose) | | | | |

| | | |
|---|---------------------------------------|---|
|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 성명 (Full name)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
| | 용인대학교 입학관리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 |
| | 전화번호 (Telephone no.) 031-8020-2918 |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입학 업무자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To the Chief of Suwon Immigration Office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
|---|----------------------------------|
|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 |
| 년 Year | 월 Month 일 Day |
|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재외국민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코로나19(COVID-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 수험번호 | |
| 지원구분 (해당란에 v) | <input type="checkbox"/> | 국외근무자의 자녀 | <input type="checkbox"/>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 | <input type="checkbox"/> | 북한이탈주민 | | |

| 지원자격 인정 희망 기간 | | 인정 요청 사유 |
|---------------|------------|----------|
| 일자 | 해당 학년 / 학기 | |
| ~ | | |
| ~ | | |
| ~ | | |

지원자 성명 : _____ (인/서명)

용인대학교 총장 귀하



- ※ 코로나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 ※ 코로나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 ※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요망